

[Translation]

NOTIFICATION OF APPLICATION NUMBER

Date of Entry of Korean National Phase: December 11, 2024
(International Filing Date: May 02, 2023)

Filing Particulars: Request for Examination: (Not Filed)
Request for Early Laying-open: (Not Filed)

Application No.: 10-2024-7041211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US2023/066525)

Applicant: RAMIREZ, Juan Pablo (6-2024-086851-4)

Agent: Hanoi Intellectual Property & Law (9-2020-1000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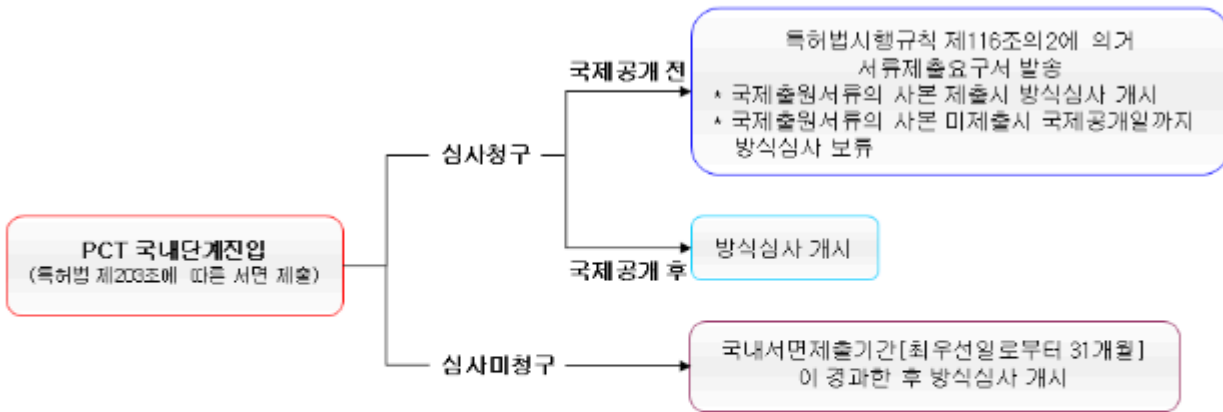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관인생략

출원번호통지서

접수일자 2024.12.11 (국제출원일자 2023.05.02)
특기사항 심사청구(무) 공개신청(무) 참조번호(IPA241518)
출원번호 10-2024-7041211 (접수번호 1-1-2024-1376021-77) (국제출원번호 PCT/US2023/066525)
(DAS접근코드B234)
출원인명칭 라미레즈 후안 파블로(6-2024-086851-4)
대리인성명 특허법인 한얼(9-2020-100061-3)

□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제출 후 방식심사 개시 안내도



♦♦ PCT Article 23 (국내절차의 연기)♦♦

- (1) 지정관청은 제22조에 규정하는 적용기간(우리나라는 2년 7개월)의 만료 전에 국제출원의 처리 또는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관청은 출원인의 명시적 청구에 따라 국제출원의 처리 또는 심사를 연체시킬 수 있다.

□ 국제공개 전 국제출원서류(Record Copy)의 사본 입수 및 제출 방법

PCT Article 13(2)(b) 및 Rule 47.4에 근거하여 국제출원과 관련된 아래 서류들이 한국 지정관청으로 송달될 수 있도록 국제사무국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방법에 따라 국제사무국으로 국제출원서류의 사본을 송달 요청한 경우 서류제출서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송달 요청대상 서류

1. A copy of the request Form(RO/101)
2. A copy of the description, claims and drawings available etc. (application Body)
3. An international search report and written opinion to ISR if available
4. Other notifications which may be necessary to start the examination at national phase

특 허 청 장

<< 안내 >>

1. 귀하의 출원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후의 심사 진행상황은 출원번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원에 따른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동봉된 납입영수증에 성명, 납부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자번호 : 0131(기관코드) + 접수번호
3. 귀하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원 이후의 각종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로(patent.go.kr) 접속 > 민원서식다운로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4.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 등록결정 이전 또는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5. 국내출원 건을 외국에도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출원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외국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권 인정기간 : 특허·실용신안은 12월, 상표·디자인은 6월 이내
※ 미국특허상표청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출원 시, 선출원이 미공개상태이면,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미국특허상표청에 [전자적교환허가서(PTO/SB/39)]를 제출하거나 우리나라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출원사실을 외부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 10-2010-0000000, 상표등록출원 40-2010-0000000
7. 종업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사용자(기업)가 명확하게 승계하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심사단계에서 특허거절결정되거나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등록이후에 특허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동봉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